정보통신 안테나

구내교환기에 타공중통신망 접속사용에 관한 고시

– 체신부고시 제88호 –

전기통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구내교환기 타공중통신망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89. 9. 29
체신부장관

1. 적용대상

항만전화 이용대상자가 통신공사회선과 접속된 기존 구내교환기에 항만공중통신망을 접속하여 구내교환기 가입자가 통신공사의 일반전화가입자 및 항만전화가입자와 접속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2. 망구성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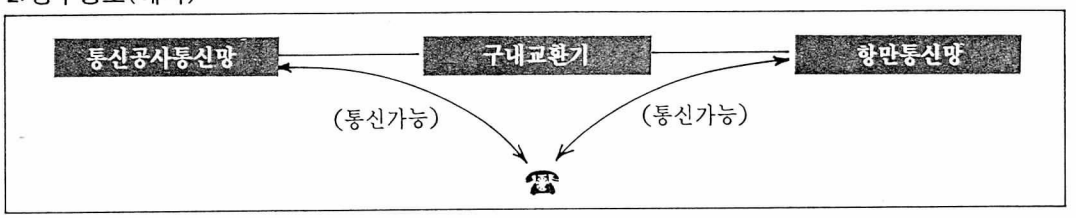

3. 행정사항

구내교환기에 타공중통신망을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양식에 의거 미리 관련되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자		구내교환기			기존통신망			접속통신망		
주소	성명	종류	용량	설치일자	사업자명	국선수	구내선수	사업자명	국선수	접속 사용일자

4. 시행일 : 1989. 9. 29.